2025 임팩트 세법학 I 추록

세법 법률 추가 개정, 시행령 개정 확정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따른 추록

- 이 추록의 발행일 : 2025년 4월 7일
- 이 추록이 필요한 책
  - 임팩트 세법학 I 권 제 20판 제1쇄(유은종 저, 2025.2.14.펴냄)
- 이 추록의 주요 내용
  1. 정오사항
     - 책 출간 후 발견된 정오사항 반영
  2. 법률 추가 개정사항
     - 2025.3.14. 공표된 세법 법률 일부개정사항 반영
  3. 시행령 확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 2025.2.28.에 공포된 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반영
     - 2025.3.21.에 공포된 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반영

SECTION I 정오사항

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
1-82	하 9 ~ 10	① 통상적 경정청구 : 연말정산세액 ~ 청구하여야 한다.	① 통상적 경정청구 : 통상적 경정청구(page 1-80)의 기간을 준용한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본다.
1-82	하 2	① 통상적 경정청구 : 종합부동산세의 ~ 청구하여야 한다.	① 통상적 경정청구 : 통상적 경정청구(page 1-80)의 기간을 준용한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본다.

2-228	하 15	있음)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있음)을 말한다.
4-3	하 13	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4-113	상 10 ~ 11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 증여받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이 증여받은

◆ 2-221쪽 그림(하5~6행)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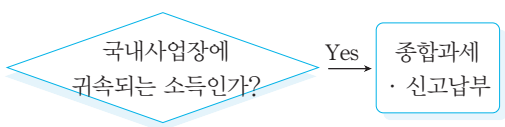

SECTION Ⅱ 법률 추가 개정사항(2025.3.14. 개정)

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
1-56	상 3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인(아래 ㉠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봄)이 상속받은
1-65	상 7	과점조합원의 한도액=	과점조합원의 한도액*=
4-112	하 5 아래 추가	〈신설〉	④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신설
4-112	하 4	④ 그 밖에	⑤ 그 밖에
4-119	하 11	④ 위 외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④ 위 외의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 1-65쪽 상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세요.

*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 과점조합원의 한도액은 그 징수부족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신설

◆ 1-150쪽 하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세요.

3.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설[1)]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이행강제금 신설[2)]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 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위 ②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0.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평균수입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장부 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1)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4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2)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4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2-46쪽 하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세요.

[참고]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에 대한 경과조치

지주회사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다음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선택규정).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40% 이상	80% 이상	100%
30% 이상 40% 미만	50% 이상 80% 미만	90%
20% 이상 30% 미만	40%(벤처기업은 20%) 이상 50% 미만	80%

지주회사가 종전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어야 한다.

① 지주회사 요건 :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일 것

② 자회사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일 것

㉠ 지분율 요건 : 발행주식총수의 40%(주권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2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 업종 요건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내국법인일 것

-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 자회사는 금융기관일 것
-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 자회사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일 것

SECTION Ⅲ 시행령 확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1. 시행령 입법예고와 내용이 달라지거나 새로 개정된 부분

아래 내용들은 공포된 시행령 내용이 입법예고와 달라져서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들과 새로 개정된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1쇄 교재에 반영하셔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
2-52	상 13	지급하는 금액	지급하는 금액 및 임직원 할인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52	상 15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하는 금액 및 임직원 할인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2-61	하 6 아래 추가	〈추가〉	⑥ 임직원 할인금액
2-64	상 13	비출자공동사업자 등*1	비출자공동사업자*1
2-64	하 9	⑤ 자산의 공동경비 :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사용횟수	⑤ 공동연구개발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개정 ⑥ 유형자산(토지 및 건축물은 제외함)의 공동사용료 개정 ㉠ 고정비 : 해당 유형자산의 소유지분 ㉡ 고정비 외의 비용 : 해당 유형자산의 사용비율
2-86	상 13	병원이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	병원이 설립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2-86	하 6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특례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은 제외함)

2-97	주석 내용	1) 위 ⑨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의 경우 개별 자산별로 상각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삭제〉
3-19	하 2	조건으로 증권을 매도하고	조건으로 증권(채권 등은 제외함)을 매도하고
3-48	상 7 ~ 8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 등[해당 지배주주 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인 관계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 등[해당 지배주주 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인 관계
3-49	상 15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재화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4-112	하 10	* 특정법인에는 내국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도 포함한다.	* "지배주주"란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서 규정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4-127	상 11 ~ 12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것과 분양권 중 공급계약서상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것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 2-52쪽 상1~11행 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세부사항

인건비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를 포함한다. ❑

◆ 2-203쪽 상3~17행 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함)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아래 ㉠과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수입을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개정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함)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 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포함함)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자산을 최초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text{해당 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times \frac{\text{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일수}}{\text{해당 자산을 보유한 일수}}$$

⑥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⑦ 채권·증권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 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본다.

◆ 3-18쪽 하4~1행의 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것일 것
㉡ 신탁의 이익이 증권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분배될 것. 다만,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19쪽 상4행의 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 공동사업의 결과로 얻은 이익이 증권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분배될 것. 다만,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54쪽 하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세요.

세부사항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이하 "연금보험료"라 함)으로 볼 수 있다.

① 다음의 금액(㉢ 및 ㉣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총 누적금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함)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함)의 금액을 납입할 것

㉠ 연간 1,800만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
㉢ 고령가구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차액 : 국내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에서 "연금부동산"이라 함)을 양도한 거주자로서 일정한 요건(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연금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등)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신설

②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

2. 시행령 입법예고와 내용은 달라지지 않고 법문구만 정비된 부분

아래 내용들은 공포된 시행령 내용이 입법예고와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고 단순히 법문구만 수정된 부분들입니다. 1쇄의 내용으로 학습하셔도 되지만, 교재의 내용을 법조문의 내용 그대로 정확하게 수정하기 원하시는 독자분들께서는 이 내용들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
2-25	하 5~3	내국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그 판매가액 또는 용역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
2-49	상 17 ~ 20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제104조의15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수입배당금 중 해당 투자나 출자로부터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외국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수입배당금액(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금액)은 제외한다.
2-54	상 15 ~ 16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함, 이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함)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함)
2-64	하 4 ~ 3	*1 비출자공동사업자 등 : 출자공동사업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 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법인 등	*1 비출자공동사업자 : 출자공동사업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 자산, 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 개정
2-65	상 1 ~ 2	*3 비출자공동사업자 등 중 어느 하나의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3 비출자공동사업자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해당 법인이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2-97	상 10 ~ 1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연 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말함)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233	하 5 ~ 4	② 각 연결사업연도 신고기한 내에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연결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연결법인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으로 한정함)의 90% 이상의 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연결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연결법인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정함)의 90% 이상의 동의를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받은 경우
3-5	하 7	㉡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2026.1.1.부터 시행)	㉡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2026.1.1.부터 시행)
3-12	상 11 ~ 14	② 환매조건부 채권 · 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이자보상액 : 거주자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채권 또는 증권을 매도하고 환매수하는 날까지 해당 채권 또는 증권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	② 환매조건부 채권 · 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이자보상액 : 거주자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채권 또는 채권에 준하는 증권(이하에서 "채권 등"이라 함)을 매도하고 환매수하는 날까지 해당 채권 등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
3-19	상 6 ~ 7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는 조각투자상품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조각투자상품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을 포함하며,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는 조각투자상품을 실물양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이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을 포함하며,
3-32	하 1	㉢ 임직원 할인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판매가액 또는 용역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개정	*2 임직원 할인금액 규정에 따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3-33	하 12 ~ 11	⑧ 임직원 할인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사업자가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인건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⑧ 임직원 할인금액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임원 등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3-44	상 2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방식
3-44	상 3	자사제품 등의 구입 또는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사제품 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3-44	상 5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방식
3-44	상 7	계열회사에 해당 임원 등이 할인받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계열회사에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3-48	상 9 ~ 1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란 사용자로부터 세 차례 이상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출생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급여와 그 다음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 경우 급여의 지급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란 사용자로부터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횟수에 관계없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한다.
4-81	상 5 ~ 9	다만, 그 이익에 ~ ② 위 ① 외의 경우 : 0원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3억원(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함)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임팩트 세법학 Ⅱ 추록

세법 법률 추가 개정, 시행령 개정 확정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따른 추록

- 이 추록의 발행일 : 2025년 4월 7일
- 이 추록이 필요한 책
  - 임팩트 세법학 Ⅱ 권 제 20판 제1쇄(유은종 저, 2025.2.28.펴냄)
- 이 추록의 주요 내용
  1. 정오사항
     - 책 출간 후 발견된 정오사항 반영
  2. 법률 추가 개정사항
     - 2025.3.14. 공표된 세법 법률 일부개정사항 반영

SECTION Ⅰ 정오사항

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
1-29	하 2	이 경우 ⓐ, ⓑ별로 각각	이 경우 ⓐ, ⓑ, ⓒ별로 각각
1-134	하 8	사업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2-27	하 5	(p.2-27)	(p.2-26)
3-41	상 11	③ 원시	② 원시
3-41	상 12	④ 법인 설립일부터	③ 법인 설립일부터
3-99	상 9	② 납납부통지서	② 납부통지서
4-6	주석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4-16	하 3	20%	30%
4-16	하 1	25%	35%
4-81	상 2	대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4-85	상 13	③ 농업소득 외 소득	③ 작물재배업 외 소득
4-93	상 6	종사하고 있을	종사하고 있을 것

4-103	하 15	② 위 (1)의 ① 외의 사유로	② 위 1)의 ① 외의 사유로
4-161	하 2	양도일이 속한은 과세기간에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4-194	하 1	배당·금융투자소득	배당소득

◆ 4-85쪽 하10행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2) 사후관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한다.

SECTION Ⅱ 법률 추가 개정사항(2025.3.14. 개정)

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
4-15	하 10	2027년 12월 31일까지	2029년 12월 31일(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4-16	하 14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및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4-36	하 9 ~ 5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의 ③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경우에는 2)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3)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2) 및 3)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4-37	상 14	(ㄱ)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ㄱ)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4-37	상 21	㈁ 국가전략기술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아래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4-37	상 26 아래 추가	〈신설〉	㈂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 중소기업의 경우 : 30% ㉡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 25% ㉢ 위 ㉠ 및 ㉡ 외의 경우 : 20%
4-37	상 27	㈂ 위 ㈀ 및 ㈁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 위 ㈀부터 ㈂까지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4-42	하 12	한다.	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한다.
4-44	상 1	경력단절 여성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4-44	하 17 (표 내용)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 근로자,
4-46	상 3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근로자의
4-46	상 6	경력단절 여성이	경력단절 근로자가
4-71	상 15	15%	15%(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30%)
4-74	상 7	10년 이내에 수도권	10년 이내에 동일한 공장에 대해 수도권
4-99	상 7	10%	15%
4-99	상 7	15%로 하되	20%로 하되
4-99	상 9 ~ 10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40%)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45%)

4-107	상 3	다만,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위 1)을 적용한다.	다만, ①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또는 ②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위 1)을 적용한다.
4-107	상 5	해지로 인하여받은 환급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4-206	하 2	**(1)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1)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유형1)**
4-207	상 19	위 ①~⑮의	위 ①~⑫의
4-207	하 3 ~ 2	(70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77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77조의2)에 따라	(70조)에 따라
4-208	상 1	**(2) 증여세감면한도액**	**(3) 증여세감면한도액**

◆ 4-11쪽 하12~7행 표 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구 분	사업장 소재지	업 종	
		도매업 등*	그 외의 감면업종
소기업	수도권 내의 지역	10%	20%
	수도권 외의 지역		30%
중기업	수도권 내의 지역	–	일반 서적 출판업 : 10% 개정
	수도권 외의 지역	5%	15%

◇ 4-38쪽 상8~19행의 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개정

① 기본공제 금액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3%(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함

㉠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 6%(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에 상당하는 금액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 위 2)의 기본공제 금액의 ㈁에 따른 금액

㈁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함

㉠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 3%(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4%)에 상당하는 금액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 위 2)의 기본공제 금액의 ㈁에 따른 금액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함

㉠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 3%(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4%)에 상당하는 금액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아래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위 2)의 기본공제 금액의 ㈁에 따른 금액

㉢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 위 2)의 기본공제 금액의 ㈂에 따른 금액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의 경우
㉠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	14%	8%	3%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위 2)의 ㈁과 동일		
㉢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위 2)의 ㈂과 동일		
㉣ 그 외의 자산	12%	7%	1%

② 추가공제 금액

각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 4-38쪽 하7행의 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③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시행령 입법 예고안)
④ 위 ①~③ 외의 사업용자산 : 2년

◆ 4-44쪽 하5행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세부사항 경력단절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①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② 위 ①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③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4-66쪽 상7행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9-1.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구 분	내 용
(1) 취 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서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한 것임
(2) 요 건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하에서 "출자법인"이라 함)이 출자한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 계획, 피출자법인의 채무 상환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함. 이하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①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경우 ②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한 경우 ③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차입한 금액으로 한정함)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 차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차입금 ㉡ 차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출자법인에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한 차입금
(3) 과세특례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함)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4) 사후관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 피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출자법인이 위 (1)의 ② 또는 (1) ③의㉡에 따라 대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출자법인이 위 (1)의 ③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출의무	①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은 출자, 대여금의 전환, 출자법인 차입금 상환에 관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106쪽 표(상12~15행)의 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한도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개정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개정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개정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 4-161쪽 상6행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5) 대여금의 출자전환차액 손금산입 신설

1) 손금산입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그 이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하에서 "출자전환대여금 등"이라 함)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출자전환일 현재 출자전환대여금 등의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자전환대여금 등의 장부가액과 주식 등의 시가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에서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이라 함)에 아래 2)에 따른 한도를 적용하여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본다.

① 출자전환대여금 등이 ㉠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 및 ㉡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아닐 것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②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출자전환대여금 등을 출자전환한 이후 5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③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에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인 경우에 해당할 것

2)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한도

위 (5)의 1)에 따른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출자전환차액상당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금액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9개 사업연도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3) 사후관리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①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해외건설자회사를 청산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

◆ 4-161쪽 하1행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20.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함)에서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하여 이스포츠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4-176쪽 하1행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15.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개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함. 이하에서 "노후자동차"라 함)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함)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조차(新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하에서 "신차"라 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 4-207쪽 상13~17행의 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⑪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85조의10)
⑫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

◆ 4-208쪽 상1행 위에 추가해 주세요.

(2)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유형2)

개인이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77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77조의2)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①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77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77조의2)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5개 과세기간의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77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77조의2)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SECTION Ⅲ 시행령 확정사항

◆ 4-71쪽 상4행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세부사항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 구분에 따른 날을 양도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
  ㉠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 만료일의 다음 날
  ㉡ 창업주가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 상실일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그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의 다음 날)

②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